담당: 고상철 공법 교수

by 년1회. 토지가격의

20%범위내

이행강제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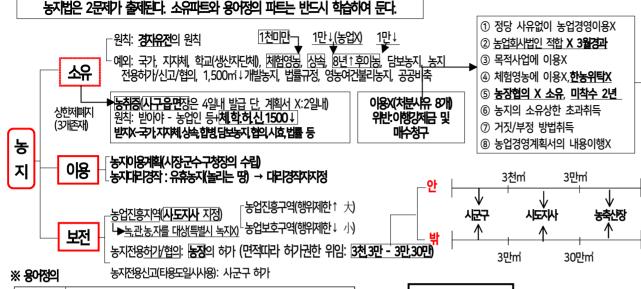
매수청구(한국농어촌공사)

by 기준: 공시지가

다 실재가래가격이 낮으면

썆금액

I처분 X



농작물의 경작자다년생 식물재배지 (지목인 <mark>전, 답, 과</mark> 이면 당연 농지임은 명백하다.) 농지 (실제 개량시설부지(유지, 수로, 배수시설 등)·고정식온실, 버섯재 배사, 비닐하우스, 농막, 간이퇴비장 등 부속시설 등의 생 토지현상) 사시설의 부지

제외

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 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**3년 미만인 토지**(3년 이 상인 경우 농지이다) 지목도 아니고, 기간도 짧고 ② 임야인 토지를 **산지전용허가 없이** 다년쟁식물 재배에 이 용되는 토지 ③ 초기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(초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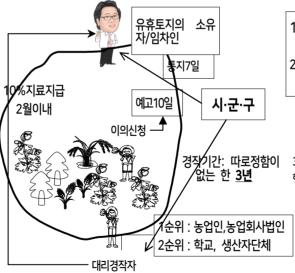
(1) 농업인 (너 직업이 모니??? 천 90, 330,120,120만원

- 1) 1,000㎡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/재배 or 1 년 중 **90일 이상 농업종**사
- 2) 농지에 330㎡ 이상의 고정식 온실, 버섯재배사, 비닐하우스 기타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
- 3) 대기축2두, 중가축10두, 소가축100두,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 or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
- 4)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

(2) 자경

- 1) 농업인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① 상시 종사하거나
- ② 농작업 1/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
- 2)농업법인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/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

대리경작제도



★★농지전용하가 취소시유★★ : ① 사위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경우 ② 사업계획 이나 규모 변경한 경우 ③ 2년 이내 사업미착수, 1년 이상 공사중단 ④ 농지보전부담금 납입 하지 않는 경우 ⑤ 허가의 취소신청, 신고 철회한 경우 ⑥ 조 치명령 위반한 경우(절대적 취소사유)

{이행강제금} (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)

③ 부과 : 처분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

처분의무기간(1년)

처분사유

해당일

④ 절차 : 미리 문서로써 계고 (요식행위) (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을 참조한 조문)

사군구

처분명령(6월

- @ 금액: 농지의 토지기액의 20%에 해당하는 금액(이행 시까지 반복 부고징수)
- ② 방법: 이행 시 까지 반복부과 (1회/매년)
- @ 이의신청 : 시군구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
- (ii) 미납의 경우: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강제징수

농업진흥지역

시도지사가 ⇒ 농책위심의 ⇒ 농림축산식품부장관(승인)

- 1. 소득증대 (관광농원 2만㎡미만, 주말농원 3천㎡ 미만)
- 2.생활개선 (단독주택등 1천m미만, 변전소등 3
- ① 농업용시설 관련된 것만 가능함
- ② 농지개량, 농업용수개발사업



대상:녹지(특별시의 녹지는제외) 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(31회 기출)

★ 신설: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업인/농업법인 →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: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매수청구 가능/ 비용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가능